

2 근로조건 관련 제도

가 최소임금제도

○ 몽골에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임금제도가 있습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월별 최저임금은 이전에 비해 0.5달러(643 투그릭) 증가한 79달러(10만 8000 투그릭)를 지불해야 하며 급여는 최소 2개월에 한번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시간당, 일당, 주당으로 계산되며 근로자 개인의 요청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며 일일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영업일을 연속 근무할 경우 휴식시간은 최소 12시간이며 연간 15일의 휴가 사용권리가 주어지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연차가 주어집니다.

6~10년 : 3일 / 11~15년 : 5일 / 16~20년 : 7일 / 21~25년 : 9일 / 26~31년 : 11일 / 32년 이상 : 14일

나 노사분규 현황

○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는데 몽골은 어떠합니까?

몽골과 관련하여 노사분규사항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아동보호법에 따른 노동금지 작업

○ 근로자 채용 시 아동(18세 미만) 보호를 위한 금지작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몽골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2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작업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육가공 작업
- 알루미늄 산업(16세 이하)

- 공항 활주로에서의 작업
- 위험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작업
- 고고학 발굴
- 벽돌제조 작업
- 전선작업
- 정신질환자 간호
- 직물제조(14세 이하)
- 기차역에서 Catering 작업(14세 이하)
- 석탄작업, 연돌 청소작업(14세 이하)
- 원형톱 또는 위험한 기계를 이용한 절단 작업
- 농작물 작업
- 건설, 또는 해체작업
- 크리스탈, 유리 제조작업
- 서비스업(16세 이하)
- 나이트클럽, 바·카지노, 서커스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작업
- 굴착공사
- 화재, 가스 구조작업
- 임업
- 움직이는 기계류(청소, 수리 등)의 작업
- 중매 작업(16세 이하)
- 해양 작업
- 광산, 운반, 지하 작업
- 석유탐사, 석유와 관련된 작업
- oxyacetylene가스를 이용한 수동가스용접과 관련된 작업(16세 이하)
- 페달, 크랭크로 작동되는 장비의 작업(16세 이하)
- 소금, 염전 가공작업
- 선박 작업(16세 이하)
- 비누 제조 작업(14세 이하)
- 스팀엔진 및 이와 관련된 장비의 작업
- 거리 장사
- 설탕 제조 작업
- 무두질 작업
- 섬유산업과 관련된 특수 작업
- 차량 운전

- 지하수 작업
- 수도 및 가스 산업에서의 작업
- 무거운 물건과 부하 작업
- 쇠를 녹이거나 용접하거나 또는 그러한 금속과 관련된 작업
- 법정, 감옥, 보호관찰 작업

※ source : review of Labour statistics Mongolia(2008.11.21~2008.12.12)

라 몽골 사회보험제도

○ 몽골의 사회보험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됩니까?

몽골 사회보험법 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개인, 국가기관, 해당 절차에 따른 사업장과 기관 등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마련되는 사회보험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퇴직, 장애, 질병, 실업 등과 같은 보험사고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법에 의해 정해진 연금,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경제적인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급여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몽골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헌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몽골의 연금보험, 급여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은 헌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급여법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몽골의 사회보험제도의 가입 및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은 고용주 및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가입하게 되며, 법률에 명시한 비율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증서를 만들어 주며, 규칙에 따라 매달 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한 사항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 특성이 있는 작업, 생산, 서비스업을 하는 기관이나 사업체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계산하여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사업장이나 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된 사업장 가입자 노사는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몽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몽골의 산업재해보험제도는 노동부에 산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이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운용됩니다.

또 몽골의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공단을 설립하여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몽골의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산업재해, 중독, 직업병과 관련하여 노동능력 30%까지 잃은 경우 5개월, 31-50%를 잃은 경우 7개월, 51-70%를 잃은 경우 9개월, 71% 이상 잃은 경우 18개월분의 평균월급을 사업주가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 중독,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36회 이상의 월급 및 월급과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 1회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제도에 의한 급여는 사회보험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연금이나 보조금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험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고 보험급여는 아니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써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 벌금제도

○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관련하여 몽골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자의 처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국가감독은 사업주의 과오로 인해 산업재해, 급성 중독이 발생한 경우 35만~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 판사와 근로감독의 국가감독은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이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 담당자에게는 100만~20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150만~3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 근로감독의 국가감독 또는 판사는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을 은폐한 담당자에게 10만~2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20만~2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 근로감독의 국가감독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관에 20만~25만 투그릭의 벌금을, 본 법 제8조 규정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고 생산용 건축물을 합작하여 소유한 사업장 및 기관에는 50만~1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 생산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고, 기계 및 설비류를 설치하며, 이를 개량, 확충 및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압력 장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노동보건에 관한 평가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담당자에게는 30만~6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60만~7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 장애자가 된 사유와 노동력을 상실한 이유 및 상실 정도를 잘못 산정한 관계 기관의 직원 및 병원-근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2만 5천~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어떤 기관이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현장감독은 각 아이막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감독원의 전문감독관이 실시하며 현장감독 권한 등은 【붙임 4】 정부 감독 및 감사에 관한 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노동기구 자료에 의하면 현 사업장의 60%정도를 현장 감독하여 평균 10,000여개의 사업장을 현장감독하고 있으나 처벌 받은 업체 또는 처벌금액 등이 집계된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현재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각 아이막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감독원은 3~4명 수준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점차 이에 대한 절차 및 전문감독원 수를 증가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